

第 159 回國會(定期會)

政治關係法審議特委

第 8 次 法案審議班(2班) 委員會會議結果報告

受 信

신재  
 事務 總長 徐 亨 傑

專門委員 석 두 수 (印)

會議日時 1992. 10 . 30 . ( 金요일 )

00 時 05 分 開議  
 15 時 20 分 散會

審査된案件	審査經過 및 結果	特記事項
1. 대통령선거법	○ 대통령선거법 합의 : 9건 1. 선거권자의 연령인하문제는 현행 20세로 합의. 2. 선거운동 방법의 포괄적 제한 규정 삭제 여부. - 현행대로 법정선거운동 방법 이외는 할 수 없도록 함. 3. 선거운동원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는 대통령 임기완료일전 100일 까지 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후 6월이내에는 복직할 수 없도록 함. 4. 정견·정책의 방송광고는 선거운동기간중 TV, 라디오를 통해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되 각 1일 5회 1분이내로 제한기로 함. 5.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한 대상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임·직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한정)의 상근 임·직원 및 그 중앙회장을 추가하고, 공무원등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홍보, 법정이외의 금품의 제공, 선거운동의 기획 및 그 기획의 실시에의 관여, 지지도 조사, 기공식거행, 휴가중 타기관의 방문금지 등을 행위제한 내용에 추가 함. 6.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법정형 등 벌금형을 삭제 함. 7.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은 국회의 다수의석순으로 제1당, 제2당, 제3당이 추천하는 자로 함. 8. 우편투표함의 용지는 현행대로 일반투표함과 혼합하여 개표토록 함. 9. 선거법에 대한 제정신청절차는 도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 사회자 : 황 윤 기 위원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法案審議班

第 次會議出席委員名單

交涉團體	委員名	出席	備考	委員 아 닌 議 員	議員	出席	備考	職員	姓名	出席	備考	
民 自 黨	金重衛	0							專門委員	石斗洙	0	
	李仁濟	0							立法審議官	朴奉國	0	
	黃潤鎰	0							立法審議官			
民 主 黨	朴相千	0							立法審議官			
	鄭璣浩	0										
國民黨	車秀明 車秀明	0										